

SNCT 차량 운행 규정

터미널내에서는 차량운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소속 운송사 및 차량기사에게 있습니다.

터미널내 차량 운행시 일반 금지사항

- . 보수작업 또는 정비작업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
- . 주행차선 또는 상하차 작업구역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 . 경적, 방송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 ① .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 . 주행차선내 무단주정차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
- . 허가없이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
- . 오물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 . 컨테이너장치장에 출입하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
- ② 터미널 내 운행속도는 최고 20km/h 입니다.
- ③ 모든 차량(장비)은 교통표지판, 지시선 및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한다.
- ④ 통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일단정지하고, 좌우측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한다.
- ⑤ 차량기사는 허용된 주·정차 지점에서만 하차 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게이트 출입시, GATE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 ⑦ ARMG작업시, RC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프레더가 분리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 후 출발한다.
- ⑧ 터미널내 운행차량은 작업중이거나 보행중인 인원을 항상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⑨ 상하차 작업전에는 반드시 잠금장치 해제상태를 확인한다.
- ⑩ 차량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⑪ 터미널에서는 터미널소속 장비 및 차량이 우선 주행한다.
- ⑫ CFS 차량 등 일반차량은 정문 경비의 지시에 순응한다.
- ⑬ 터미널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다.
- ⑭ 터미널내에서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규정위반 차량 및 운송사 벌점 배점표

No	위 반 내 용	벌 점	비 고
1	사전정보없이 차량을 반입시킨 운송사	1	
2	차량상단에 차량번호를 미부착한 차량	1	
3	경음기, 방송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3	
4	GATE 내외부의 차량정지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5	교차로 등에서 일단정지 표지를 미준수하는 경우	2	
6	지정된 보행로이외의 구역으로 보행하는 경우	3	
7	컨테이너 상하차시 차에서 내려 수신호 하는 경우	3	
8	터미널내 제한속도(20km이하)를 위반하는 차량	3	
9	터미널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	4	
10	GATE 또는 터미널내에서 무단주정차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경우	5	
11	지정된 차선을 위반(역주행 포함)하여 운행하는 경우	6	
12	GATE 근무자의 허가없이 OOG GATE로 통행하는 경우	7	
13	GATE 안전표지 또는 바리케이트를 임의 철거 후 통행하는 경우	10	
14	GATE, RC 근무자 또는 장비기사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15	터미널 장비에 무단으로 탑승하는 경우	10	
16	차량의 블록 진입전 (어플을 이용하여)블록엔터를 실행하는 경우	10	
17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	10	
18	터미널내에서 타인에게 폭언을 가하는 행위	15	
19	무단으로 장치장 내부에 출입하거나, 용변을 보는 행위	25	
20	터미널 시설물 또는 장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	1~3개월 출입정지	

벌점에 따른 제재조치

No	벌 점 범 위	제 제 조 치	비 고
1	16점 ~ 20점 차량	5일 출입금지	트레일러
2	21점 ~ 25점 차량	7일 출입금지	"
3	26점 이상 차량의 매 적발시	건별 3일씩 출입금지	"
4	운송사의 월간 차량벌점의 합이 30점 이상인 경우	운송사 대표의 시정확약 공문 접수	운송사

▶ 최종 적발된 시점기준,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벌점전체가 삭제**됩니다.